

의안번호	2211560
의 퇴 인	박희승 의원
회 답 일	2025. 8. 11.
추 계 번호	25C3844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50%에서 80%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526억원 (연평균 2,10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	2,234	2,173	2,108	2,040	1,971	10,526	2,10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8541호 부칙 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)	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금액 상한을 연금보험료의 50%에서 80%로 상향 조정	의무규정
2	법률 제11143호 부칙 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)	사업장가입자인 농어업인 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금액 상한을 연금보험료의 50%에서 80%로 상향 조정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법률 제8541호 부칙 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)	○	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2	법률 제11143호 부칙 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)	○	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, 관련 보건복지부고시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원 내용은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시 연금보험료의 80% 정률 지원,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시 103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92,700원의 80%를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게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50% 범위 내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
 - 현재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20507호 부칙 제2조는 농어업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‘기준소득금액’ 이하인 경우 50%를 정률 지원하고, 초과인 경우 ‘기준소득금액’의 50%를 정액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 조건을 유지하되 지원 비율만 80%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은 ‘기준소득금액’이 103만원¹⁾ 이하이면서,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연 6천만원 미만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미만인 사람²⁾

1) 「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300호)

- 추계기간의 월별 지원 대상자 수 및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대상자 수와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추세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 - 2023년 7월 1일부터 농어업인 제외 기준 중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, 2023년 7월 이후의 대상자 수와 평균 기준소득월액 자료를 활용
 -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월평균 지원자 수는 감소한 반면, 평균 지원 단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, 이 추세가 추계기간 지속된다고 가정
 -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시계가 짧으므로 월별 변동 추세를 적용하여 월별 대상자 수 및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여 추계
-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 - 참고로, 현행 법률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
-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 수 및 이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등의 추이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를 산출

2) 「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112호)

[표 2] 국민연금 농어업인 가입 현황(2023년 7월 ~ 2025년 6월)

(단위: 명, 원, %)

기준소득 월액	구 분	2023년		...	2025년		월평균 증가율
		10월	11월		1월	2월	
103만원 이하	월 평균 가입자 수	205,514	200,797	...	181,748	180,324	-0.7
	평균 기준소득월액	961,302	962,070	...	967,997	968,487	0.1
103만원 초과	월 평균 가입자 수	106,703	109,394	...	98,748	97,393	-0.7

자료: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추계결과,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
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526억원(연평균
2,10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기준 소득월액	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103만원 이하	월 평균 대상자 수 (명, A)	160,995	147,968	135,996	124,992	114,878	-	-
	평균 기준소득월액 (원, B)	976,049	982,036	988,060	994,121	1,000,219	-	-
	보험료율(% , C)	9.5	10.0	10.5	11.0	11.5	-	-
	1인당 평균 지원 단가 (원, D=B*C*80%)	74,180	78,563	82,997	87,483	92,020	-	-
103만원 초과	월 평균 대상자 수 (명, E)	85,255	78,655	72,566	66,949	61,766	-	-
	1인당 평균 지원 단가(원, F) ¹⁾	78,280	82,400	86,520	90,640	94,760	-	-
추가재정소요 (억원, A×D×12개월+E×F×12개월)		2,234	2,173	2,108	2,040	1,971	10,526	2,105

주: 1) 103만원에 보험료율(D)을 적용하여 월 보험료를 산출한 후 지원비율인 80%를 적용한 값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